의안 번호	56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9.28.)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9.28.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일: 2026. 8. 26. 창원시장

나. 회부일자: 2026. 8. 27.(의안번호 제5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9.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가. 마산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및 지역공동체 등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임.

나.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 1. ~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2026년 가족사업안내」 에 따른 가족센터 운영 지침

○ 추진 필요성

- **(전문성)** 가족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효율성)** 민간기관의 조직·인력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연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지원체계 강화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른 가족센터 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 관련 사업 등

라.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창원시 마산가족센터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마산YWCA 지하 1층	816.59㎡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강당, 언어발달교실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마산합포구 반월민원센터 2층	104.54㎡	공동육아나눔터

※ 마산가족센터 : (사)마산 YWCA 소유 시설

※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산가족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운영.

마. 위탁기간 : 5년('27.1.1. ~ '31.12.31.)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른 가족센터 위탁기간(5년) 적용

바. 위탁예산 : 연간1,344,500천원[2026년 기준] (인건비 및 사업비)

- 가족센터 1,284,710천원, 공동육아나눔터 59,790천원

※ 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선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가족센터의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적정
경제적 효율성	민간기관의 기존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별도 운영 체계 구축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적정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가족상담, 가족관계,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기관 위탁 운영이 적정함	적정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실적, 이용자 만족도, 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통해 위탁사무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적정
관리·운영의 투명성	시의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적정
민간서비스 공급 현황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함	적정

자. 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대　　상: 창원시마산가족센터
- 평가기간: 2022. 1. ~ 2026. 7.
- 평 가 일: 2026. 8. 13.
- 방　　법: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표에 따른 운영 전반 평가

○ 평가결과: 91점(100점 만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점수
운영관리	40점	36점
사업성과	50점	46점
사후관리	10점	9점
합 계	100점	91점

○ 주요 평가내용

-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상담·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및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 인력·재정·사업활동 등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외부자원 연계 및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임.

4.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1]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 및 자녀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3]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Ⅰ권, 88쪽)에서도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5]에 따라 8. 13.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1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가족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인정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족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와 책임성·공신력·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연간 1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5년간 장기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지표 등을 토대로 성과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 고 창원시 가족센터 현황

구 분	창원시가족센터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개 소 일	2018.1.	2016.1.	(본관) 2025.8.29. (분관) 2025.3.17.
소 재 지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진해구 편백로 39, 2층 (분관) 진해구 용원로 41번길 8
운 영	시 직영	민간위탁 (마산 YWCA)	공공위탁 (창원복지재단)
위탁기간	-	2022.1.1. ~ 2026.12.31.	2025.1.1. ~ 2029.12.31.
직원현황	27명 (공무직 23, 기간제 4)	22명	13명
예산현황	1,413,630천원	1,284,710천원	905,820천원
시설현황	1,547㎡	816.59㎡	723㎡ (본관 456㎡ 분관 267㎡)